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대학 우수인재 선발 범위 확대 및
의무복무 전제 지원 신설 〉

■ 주진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6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대학 우수인재 선발 범위 확대 및 의무복무 전제 지원 신설 ..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주진우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27.
3. 회 부 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분야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지방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며 수도권 대학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일부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되어 있어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지방대학의 학문 분야 간 인재양성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지역 정주 인재를 종합적으로 육성하

는 데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나, 졸업 이후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지방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역균형인재 전형이라는 혜택을 통해 입학한 인력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을 통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지방대학 우수인재 선발 범위 확대 및 의무복무 전제 지원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의과·한 의과·치과·약학·간호대학(이하 “의과대학 등”이라 함)에 한정하던 것에서 모든 계열의 대학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 을 통해 의과대학 등과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생략)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u>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u>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 ----- ----- <u>대학의</u> ----- -----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⑤·⑥ (생 략)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과대학, 한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
호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에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의료
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것
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
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1) 지방대학 우수인재 선발 범위 확대

-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라 함)」은 제15조에서 (제1항) 지방대학의 장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장에 대하여, (제2항)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 소재지에 거주한 사람이 의과대학 등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할 의무와 (제3항)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할 의무를 각각 부여하고 있음.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의미하는 것으로,¹⁾ 2026년 기준 지방대학 대상 학과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의무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제2항에 따른 선발은 6.9%, 제3항에 따른 선발은 7.1%가 각각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지방대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준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미준수 (A)	전체 (B)	미준수비율 (A/B)
해당 지방대학 소재지 고등학교 졸업자 선발 (제15조제2항)	의과대학	2	26	7.7
	한 의과대학	1	9	11.1
	치과대학	0	6	0.0
	약학대학	0	21	0.0
	간호대학	12	152	7.9
	한약학과	0	2	0.0
	소계	15	216	6.9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 선발 (제15조제3항)	법학전문대학원	1	11	9.1
	치의학전문대학원	0	2	0.0
	한의학전문대학원	0	1	0.0
	소계	1	14	7.1
합계		16	230	7.0

주: 1. 2026년 기준

2. 의학전문대학원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곳이 없음

3. 한의학전문대학원(부산대) 학석사통합과정 제외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제15조제2항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의무를 ‘의과대학 등’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계열의 대학’으로 확대하여 적용함.

☐ 현행법 제15조제2항에서 지역 우수인재 선발 의무를 의과대학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 학생에 비해 해당 지역에 정주하기 쉬운 해당 지역 학생에 대해 그 지역 의과대학 등에 일정 비율 이상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당 지역의 인재를 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그 인재가 대학 졸업 후에도 의료인력으로 종사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력에 대해 해당 지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그 지역의 인재를 종합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해당 지역 우수인재의 입학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그 외의 지역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기회가 제한되는데,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 다른 지역 학생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지방대학별·학과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의무복무 전제 지원 신설

- 개정안은 제15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과·한의과·치과·약학·간호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에 따른 경우, 지방대학 의과대학 등과 의학·치의학·한의 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재학 기간 중 재정적 지원을 받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재학한 학교 소재 지역에 근무하는 유인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2026.2.24.부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법”이라 함)」이 시행되어,²⁾ ‘복무형 지역의사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예정인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아 의무복무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대학의 장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함.³⁾

2) 「**지역의사법**」(법률 제21239호, 2025.12.23. 제정, 2026.2.24.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지역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이하 “**복무형 지역의사**”라 한다)

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이하 “**전문의**”라 한다)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계약형 지역의사**”라 한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을 말한다.

3. “**의무복무기관**”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실제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개정안과 유사한 항목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적용하는 대학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한 대학은 현행 「지방대육성법」 적용 대학과 동일함.

[입학금 등 지원 및 복무의무 비교]

구분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현행 「지역의사법」
대상	(제15조제2항) • 지방대학의 <u>의과대학</u> ,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 비수도권 소재 <u>중학교</u> 및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 <u>고등학교 졸업</u> (<u>졸업예정자 포함</u>)자 - 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 소재 지역 <u>거주자</u>	(제4조제1항 및 제2항) • <u>의학 교육과정</u>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함 •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다음 사람을 선발하여야 함 - 해당 의과대학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u>중학교</u> 및 <u>고등학교 졸업</u> (<u>고등학교는 졸업 예정자 포함</u>)자 - 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 소재 지역 <u>거주자</u>
	(제15조제3항) • 지방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자	(제4조제1항) • 위의 요건 외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
재정 지원	(제15조제5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u>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u> 등 지원 가능	(제5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u>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u> 등을 지원하여야 함
복무 의무	(제15조제5항) •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 의료기관에서 <u>의료업무에 종사</u>	(제7조제1항) • 의무복무지역 10년간 <u>복무</u> 하여야 함

[학비 등 지원 및 의무복무 적용 대학 비교]

현행 「지역의사법」 상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대학 의과대학 소재지		「지방대육성법」 적용 대학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 단국대는 죽전캠퍼스(경기도 용인 특례시 소재) 기준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해당되어 미포함
충청북도	건국대, 충북대	「지역의사법」 적용대학과 동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대, 조선대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 전북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영남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강원특별자치도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한림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	*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미포함
경기도, 인천광역시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차의과학대	

주: 「지역의사법 시행령」 별표1.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지역의사법」은 개정안과 비교할 때 의학 교육과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차이가 있으나, 개정안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그 효과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과대학 이외에 한의과·치과·약학·간호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범위를 넓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에 따라 별도로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관련하여 그 비율을 시·도별 의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취약지의 분포,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지역별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지역에 복무하는 의사의 수를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⁴⁾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모를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전 학문 분야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등 현행 법령상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존중하는 원칙과 충돌 가능성이 있고 신입생 충원율이 100% 미만인 다수의 지방대학의 경우 미충원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의사법」의 시행(2026.2.24.)에 따라 도입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이를 위해 2027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과 유사하므로, 제도의 신설보다 연계·협력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등 교육부와 유사한 사유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할당을 통한 선발은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고, 의료 인력 확충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 아래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체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법률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지역의사법」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의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분포 및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지역별 분포,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한편, 전북대학교는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안정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립순천대학교는 간호 인력은 비교적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적용 대상에서 간호대학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의료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멸 위기가 높은 취약 지역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